

6.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552호 1999. 9. 9

개 정 이 유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999. 1. 29, 법률 제5728호)되어 무단방치한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처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에 대하여 2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 확인검사를 폐지하는 등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건설기계의 제작자가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마다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동일하게 제작되는 건설기계를 2년마다 반복하여 검사를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여 건설기계제작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령 제12조).
- 나. 건설기계사업자 단체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사업이 허가절차 및 공제사업의 내용 등을 정함(령 제17조 및 제17조의2 신설).
- 다. 도로 등에 무단방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처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의 확인방법, 매각 및 폐기절차 등을 정함.(령 제17조의3 신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8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를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8조제2항을”을 “법 제8조의2”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불도우저
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 로우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로울러
8. 노상안정기
9. 콘크리트벡칭플랜트
10. 콘크리트피니셔
11. 콘크리트살포기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 아스팔트피니셔
14. 골재살포기

- 15. 쇠석기
- 16. 공기압축기
-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18. 항타 및 항받기
- 19. 사리채취기
- 20. 준설선
- 21. 특수건설기계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 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공제사업의 허가)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내용
2. 공제계약
3. 분담금·공제금·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지급준비금·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4. 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①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3(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①시·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방치된 건설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③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본문중 “법 제38조”를 “법 제38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권한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권한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 위탁한다.

별표 1 제4호(지게차)의 범위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 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주택회보